####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2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5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원장) ① (생 략)	제12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우</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②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	
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하다고 인정될 때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우</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6
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	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